

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23. 03. 20

## 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적용범위)

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3조(수수료의 종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계약·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나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마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귀속됨

#### **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**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#### **제5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**

- ① 회사는 운전자산의 특성 및 규모,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집합투자기구 별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한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#### **제6조(설명 의무)**

회사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## **제7조(투자광고)**

회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**제8조(수수료의 인상)**

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등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집합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#### **제9조(공시 및 통보)**

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 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